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

저자: 정상조

발행년도: 2000

문헌: 통상법률

권호: 통권 제33호 (2000년)

출처: 법무부

<목 차>

I. 머리말

II. WTO/TRIPs체결이후의 국내법 개정

1. 저작권법의 개정

2. 상표법의 개정

3. 특허법의 개정

III. WTO/TRIPs체결이후의 통상문제

1. 저작권 관련 통상문제

2. 상표 관련 통상문제

3. 특허권 관련 통상문제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정상조

초록

지적재산권은 WTO체결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통상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WTO/TRIPs는 개발도상국에게 동협정의 이행에 4년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허용해주었는데, 동 유예기간도 1999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동 협정상의 계약국 의무에 따라서 자국의 국내법이 동 협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WTO/TRIPs는 2000년도에 WTO 지적재산권위원회(Council for TRIPs)로 하여금 각 계약국의 협정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러한 이행여부의 점검은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WTO/TRIPs 체결 후 국내법 개정상황을 살펴보면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전송권을 도입했고, 도서관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저작권법은 아직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도메인네임 등 최근에 문제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특히 문제되는 상표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특허사정을 하도록 하고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권의 무효주장의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특허법원에 제기되도록 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WTO/TRIPs 체결 이후 우리 법 개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직물도안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이 통상문제가 되고 있고,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악의로 주지의 외국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WTO/TRIPs 체결 이후 우리 법 개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직물도안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이 통상문제가 되고 있고, 상표법과 관련하여서는 악의로 주지의 외국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이의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

한국의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이 WTO/TRIPs를 준수하고 있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외국인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국에서의 보호수준에 비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미국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상보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도 향후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주제어

통상, 지적재산권, TRIPs,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I. 머릿말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고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볼 수 있고,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법이 제정된 이래 대폭 개정된 것도 1986년도에 있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문제로 제기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노사분규의 급증과 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어서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 주1) 기술집약적 산업은 스스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게 되고 선진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요구와 함께 국내 지적재산권법의 대폭적인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주2) 다시말해서, 1986년말에 지적재산권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된 이후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고 등록건수나 분쟁건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내수요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의 통상협상의 결과이기도 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설립조약 등 통상조약이 체결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은 지난 10여년간 중요한 통상문제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통상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협정은 20세기말의 가장 커다란 변화로 국제통상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게 된 국제협정이다. WTO협정은 그 부속협정의 하나로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WTO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주 3) WTO협정의 준수를 위한 국내법의 개정 또는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WTO협정의 국내법화와 동시에 각국 정부는 새로운 쟁점들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는 WTO기구의 차원에서 새로운 협상이 전개된 바는 없지만, 이제까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가 WTO체결이후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WTO협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적재산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협상을 주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WIPO가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WTO체결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논점으로는 디지털시대의 저작권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들이 잠재되어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라거나 색채상표 또는 유전공학적 발명 등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현행의 국제규범이 그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명백히 하지 못하고 있고, 병행수입의 금지라거나 지적재산권의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문제 또는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적 한계나 그 역외적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WTO체결후 다시 각국의 의견이 개진되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새로운 과제들이었다.

지적재산권은 WTO체결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통상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WTO/TRIPs는 개발도상국에게 동협정의 이행에 4년간의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허용해주었는데, 동 유예기간도 1999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동 협정상의 체약국 의무에 따

라서 자국의 국내법이 동 협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WTO/TRIPs는 2000년도에 WTO 지적재산권위원회(Council for TRIPs)로 하여금 각 체약국의 협정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러한 이행여부의 점검은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주4)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는 매년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러한 보호현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1999년도에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보다가 2000년도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보아서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마찰의 정도가 커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주5) 이하에서는 WTO/TRIPs 체결 이후의 국내법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새로운 통상문제로 제기되는 있는 논점들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II. WTO/TRIPs체결 이후의 국내법 개정

1. 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은 통상문제로서 가장 중시되고 따라서 가장 많은 개정을 경험한 지적재산권분야에 해당된다. WTO/TRIPs협정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국내 저작권법은 1994년 1월에 개정된 바 있는데, 동 개정에 의해서 음반에 관한 소위 대여권을 인정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또한 동 협정이 체결된 이후 동 협정의 최소보호기준(minimum protection)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은 1995년 12월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에 의해서 외국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급보호를 허용하게 되었고, 번역을 위한 강제이용허락제도를 폐지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했으며, 저작인접권자 특히 실연자에게 복제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후 인터넷의 등장과 저작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99년 12월에 다시 개정을 함으로써, 소위 전송권을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고 전송권 등에 대한 제한으로서 도서관에 의한 복제 및 전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대여권과 소급보호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소개가 있었으므로,주6) 이하에서는 전송권의 도입 등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한다.

(1) 저작물의 전송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38]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나 방송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복제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저작물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배포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저작권법상의 배포권은 본래 유체물(tangible medium)에 고정된 저작물사본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화일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배포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단 저작권자에 의한 배포권의 행사가 있는 후에는 적법히 저작물 사본(책, 음반 등)을 구입한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다시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배포권은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화일의 경우에는 자신이 동 파일을 저장해두고서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다수의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저작권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것이고, 바로 이점에서 컴퓨터 전송과 배포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컴퓨터통신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수신자의 컴퓨터에 동일한 내용의 디지털화일이 저장되기 때문에 수신자에 의한 복제가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컴퓨터 전송을 복제권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신자에 의한 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가 수신자에 의한 복제권침해로 되고, 무단 전송을 위해서 전송자의 컴퓨터에 디지털화일을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권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저작물을 제공하더라도 수신자들이 저작물을 저장하지 않고 오직 화면상으로 보거나 감상할 뿐인 경우에는 과연 수신자에 의한 복제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96년 12월에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 및 음반·실연조약(WIPO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을 채택하고 동 조약에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본래 공중전달권의 개념은 우리 저작권법하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제조약 가운데 베른조약(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연극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자에게 그 공연물에 대한 공중전달권을, 어문저작물의 저작자에게는 그 낭송물(recitation)에 대한 공중전달권을,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원저작권자와 영상저작물의 저작

[39]

권자에게는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유선의 공중전달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었다.주7) 따라서, 베른협약의 공중전달권 개념에 의하더라도, 어문저작물의 낭송물에 한정되어 있을 뿐인데, 컴퓨터프로그램 등 어문저작물 그 자체와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이 디지털화해서 컴퓨터통신으로 공중에 전송되는 빈번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베른협약과 WIPO저작권조약에서의 공중전달권은 전통적인 의미의 점유이전에 의한 배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 전달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그에 이용되는 기술은 아날로그 기술이든 디지털 기술이든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중전달권은 일방적인 저작물의 공중전달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컴퓨터통신에서 그러하듯이 쌍방향적인 저작물 공중전달 또는 주문형 공중전달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공중전달권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전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이의 저작물전달은 그 권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WIPO저작권조약에서 공중전달권이 도입된 것은 베른협약에서와는 달리 저작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문예저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중전달권은 기존의 배포권과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점유이전이 없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즉 공중전달권의 행사결과로 저작물의 전자적(electro-magnetic) 또는 광신호(optical) 복제물이 수신자에게 생기더라도 그러한 수신자의 복제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더 이상 제3자에게 전달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에, 공중전달권에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1998년의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저작권법은 1999년의 개정을 통해서 각각 전송권이라는 권리를 신설했다.주8) 전송권은 기존의 배포권과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점유이전이 없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한, 전송에 있어서 공중의 개념은 다수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의 개인에게 E-mail 등의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전송은 복제·배포·방송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송권을 새로이 도입하면서 개정 저작권법은 방송에 관한 기존의 법규정을 대부분 개정하게 되었다. 다만, 개정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도입하면서 가수와 음반제작자에 관한 규정에서는 전송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저작권접권의 내용으

[40]

로 복제나 방송 이외에 전송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수등의 실연이나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락없이 이용하되 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극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WIPO음반·실연조약 제10조 및 제14조는 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특히 동조약 제15조는 전송보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단일의 보상금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번의 개정 저작권법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최근에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된 MP3화일주9)의 전송은 저작권접권에 관한 규정에서 전송에 관한 권리규정 및 권리제한과 보상청구권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바, 주10) 개정 저작권법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일 뿐이다.

(2) 가상도서관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지만,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그 예외로서 허용된다.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도서관에서의 복제허용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위 가상도서관(digital library)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이제까지 도서관이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현행법하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루어진다면 복제권 및 배포권의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컸다. 그러나, 컴퓨터의 대중화에 따라서 기존의 도서관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28조](#)를 개정해서 "도서관 등은 당해 도서관내 또는 다른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종이책의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허용해도 무단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출도서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그 판매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지만,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관외로 전송해서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일반 개인은 당해 저작물을 구입

[41]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된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도서관 이용자 이외의 자에 의해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면 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관 이용자가 디지털저작물을 복제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또한, 도서관

사이에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서로 복제해서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의 기본원리에도 반하고 베른조약 등의 국제조약에도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3)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

저작권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라고 함은 저작권자의 이름과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 등과 같이 저작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량이 많고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관리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가 긴요한 정보가 되며, 저작권관리정보의 정확성과 그 용이한 접근이 정보망 또는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공에 긴요한 요소가 된다. 저작권관리정보를 통해서, 저작물이용자들은 정보망 또는 통신망에서 특정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관리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됨으로써 정보망 또는 통신망 속의 저작물에 관한 효율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용허락에 관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라서 저작물이용이 급증하고 통신망에 유통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총량이 급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저작권집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관리정보의 정확성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음반조약은 저작권관리정보의 법적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디지털저작물의 대량유통에 대비하여 저작권보호의 충실화와 저작물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아직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라 함은 "프로그램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

[42]

로그램저작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과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컴§2). 이러한 의미의 저작권관리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조장하거나 기여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프로그램을 배포·수입·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컴§29④), 그에 대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다만, 저작권관리정보의 제거·변경등의 행위가 직접적인 저작권침해행위는 아니고 저작권침해를 조장하거나 기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저작권침해의 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11)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형량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다(컴§46③).

(4) 기술적조치의 보호

기술적조치(technological measures)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컴§2). 이러한 기술적조치를 정당한 권원없이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저작권침해를 조장하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등을 공중에 배포하거나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를 저작권침해의 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컴§30 및 §46).

다른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거나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컴§10, §12, §14), 이와 같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기술적 조치로 인해서 당해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술적 조치에 의해서 부당하게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로 된다.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의 부당한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예까지 기술적 조치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을 것

[43]

이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금지해서도 아니되고 범죄로 처벌해서도 아니될 것이다.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은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를 저작권의 침해로 보아서 민사적 구제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VTR이 무단복제만을 위한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VTR 제조·배포를 한다고 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주12)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기나 장치 또는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미국 개정저작권법(DMCA) 주13) 와 대조되는 것으로 아마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이론에 따르면 족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해서 타인의 저작권침해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구체적 기술적조치 무력화 행위를 한 자가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기술적 조치의 무력화 행위 및 관련 기기 배포 등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술적 조치의 법적보호의 범위도 프로그램 저작권 뿐만아니라 어문저작물 등 저작물을 모두 포괄하는 저작권 전체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넓혀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법하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에 설치된 인증장치나 복제방지명령어가 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맷되거나 전달되는 타인의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장치나 명령어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14)

[44]

2. 상표법의 개정

(1) 개정 현황

등록상표로 보호될 수 있는 상표의 범위에 관하여 WTO/TRIPs는 색채상표를 허용하고 소위 사용에 의한 식별력획득을 인정하는 한편, 소리상표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15) 국내 상표법도 1995년 개정에 의해서 색채가 상표의 구성요소로 결합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주16) 또한, WTO/TRIPs는 여타의 통상협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지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상표법도 1997년 개정을 통해서 포도주와 증류주(위스키 등)의 산지표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주17) 특히 1997년 개정에서는 외국의 주지상표를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상표부등록 사유를 열거해서 규정하게 되었고, 연합상표제도의 폐지와 다류출원 제도의 도입 및 상표권이전절차의 간소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주18) 이러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소개가 있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최근에 문제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특히 문제되는 상표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2) 도메인네임

도메인네임은 엄밀한 의미에서 명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화번호나 우편번호와 같은 식별번호에 해당되지만, 현실적으로 도메인네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경우에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 한도에서는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충돌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의 상호 또는 이미 등록된 타인의 문자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네임으로 하여 다른 상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상호 또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상호와 상표의 모순·충돌에 대해서는 이미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을 두어서 그 해결 내지 조화를 꾀하고 있지만, 도메인네임과 상호·상표와의 충돌 내지 상호침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현행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4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약칭함)하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상품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하에서보다는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고 상표의 등록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상표에 대해서 성립된다는 점에서 상표의 주지성을 전제로 한다. 최근에 내려진 서울지방법원판결은 금강제화가 구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표 "비제바노"가 소위 저명상표이기 때문에 피고가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였다 해도 피고의 상표등록의 동기 자체가 타인의 저명한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상표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원고 금강제화는 동법에 따른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네임을 상표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급상품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주체의 혼동이 초래된 경우에는 당해 도메인네임의 사용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보아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샤넬"사건에서주19) 서울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인 "영업주체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 외에 후원관계의 혼동도 포함하는 광의의

혼동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타인의 상호나 상표와 동일한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네임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동 법원은 피고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가 동 도메인네임을 자신의 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원고 샤넬의 영업표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동 법원은 샤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만,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전단계에 불과한 것처럼 전제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예방청구로서 동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샤넬이라는 영업표지를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는 행위와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별되

[46]

는 행위이고 현실적으로도 별도의 행위인데 예방청구로서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되고, 부정경쟁행위가 재발할 위험이나 우려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의무와 금지명령의 내용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별개의 행위를 금지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도메인네임의 출처표시 기능을 고려해볼 때 피고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영업주체의 혼동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동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여부를 달리해야 할지 여부는 더욱 면밀한 해석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영업주체의 혼동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하이마트 사건에서주20) 신청인은 지난 10년간 "하이마트(HIMART)"라는 저명한 상호로 가전제품 판매업을 해오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http : //www.himart.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후 위 도메인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전자주문 방식으로 가전제품 등의 판매업을 하고 그 홈페이지 및 하위 사이트 화면의 좌측 상단에 "Himart"라는 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주지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인식되는 문자를 도메인네임 및 전자우편주소로 사용함으로써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하고 동 도메인네임 및 전자우편주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설사, 웹사이트의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가 상이한 영업주체라고 하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라도 그 주소만으로 소비자들이 영업주체의 혼동으로 인해서 동 웹사이트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데 절대적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샤넬사건에서와는 달리 도메인네임의 보유자가 전혀 상이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혀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단순히 등록한 후 구체적인 영업은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동 도메인네임을 양도하는 소위 "도메인네임의 무단점유 또는 매점매석(cybersquatter)"의 경우에까지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그러한 차이점을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Viagra"사건주21) 이다. Viagra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이 명백히 한바와 같이, 부정경

[47]

쟁방지법상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이란 동종의 상품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관계가 없는 이종의 상품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피고의 판매상품이나 영업이 원고의 그것과 구별되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영미법상 소위 희석화(dilution)에 입각해서 피고가 원고 상표의 고급이미지 및 주지, 저명성에 무상으로 편승(free ride)하여 주지·저명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희석화시키는 것이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과 무관하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한 희석화이론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 인정될 수 없다.

전술한 "샤넬" 및 "Viagra" 사건에서 법원은 한결같이 상표권을 근거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법상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보호와는 달리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여부가 엄격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보호 또는 침해인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상표법하에서는 등록된 상표가 모두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주지성을 갖추어야 보호되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보다 더 많은 상표가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상표법상 등록 단계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유사성이 엄격히 요구되지 아니하고 저명상표의 가치를 희석화시킬 수 있는 표장의 상표등록이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상표권침해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유사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영미법상의 희석화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소지가 적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영미에서와는 달리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로 구성된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상표권침해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다.주22)

전술한 "Viagra" 사건에서 원고가 한국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프랑스 또는 제3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사용의 개념은 아주 좁고 엄격하게 규정·해석되고 있는데 반해서, 영미의 상표법은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상표권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이 어느나라의 법원에서 어느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은 크다. 인터넷은 그 속성상 전세계 어디서나 도메인네임의 접속 및 사

[48]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 보유자의 등록 및 사용행위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 결정의 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앞으로 해결을 기다리는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전술한 Viagra사건에서 피고가 미국에도 상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사실이 있어서 미국 법원이 자신의 국제적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자국의 상표법상 희석화이론에 입각해서 상표권의 침해로 판단한 후 도메인네임의 등록말소를 명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도메인 네임의 중요성과 국제적 분쟁가능성을 고려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도메인네임의 등록과 분쟁해결 및 새로운 최상위도메인네임(gTLD)의 도입 등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999년 4월 30일에는 WIPO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f the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가 나오게 되었다.주23) WIPO 최종보고서는 등록절차와 행정적 분쟁해결절차 뿐만아니라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권고도 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기준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WIPO는 저명

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re)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도메인네임회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ICANN)가 1999년 8월 26일에 채택한 "도메인네임분쟁의 해결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UDRP)"에 따라서 WIPO 중재·조정센터가 행정적 분쟁해결기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최근에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보유자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도메인 네임은 호주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호주등록기관은 자신의 등록약관에서 UDRP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표권자 공동 약관의 행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WIPO 중재·조정센터에 분쟁의 해결을 신청한 사건에서, WIPO중재·조정센터는 당사자들의 국적을 중시해서 미국판례에서 제시된 법원칙을 토대로 해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주24)

(3) Meta-tag

웹페이지는 HTML코드와 같은 소스코드로 작성한 명령과 지시가 포함되어 있

[49]

는데, meta-tag라고 함은 그러한 소스코드에 삽입된 문자로서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의 검색엔진이 효율적으로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웹페이지 소스코드에 포함시켜 놓은 '색인어'를 말한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방문을 많게 하려면 meta-tag라고 하는 색인어를 다양하게 삽입할 필요가 있는데, 임의로 타인의 저명상표를 meta-tag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방문율을 높이는 경우에 이는 가상공간의 도로표지판과 같이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사례를 보면, 웹 페이지의 소스코드(source code)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meta-tag로 포함시킨 것은 출처혼동과 상표가치의 희석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주25) 그러나 웹페이지의 내용이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meta-tag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된 사례도 있다.주26)

미국연방상표법은 희석화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넓은 범위의 상표권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eta-tag는 소비자에게 직접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흡인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표가치의 희석과 출처표시의 허위에 해당되어 미국연방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법하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우리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meta-tag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위의 상표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meta-tag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그 출처를 인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 것인데 반해서, meta-tag는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아니고 오직 인터넷 검색엔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에 입

[50]

력된 표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eta-tag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표시이고 광고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meta-tag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타인의 상표를 허락없이 meta-tag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표법상으로도 상표권의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본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정의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의 표식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meta-tag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표식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웹사이트인 것으로 유인되는 측면이 있으나 동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문자나 도형 등으로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한 곧바로 상이한 상품이나 상이한 영업주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도에서 상품주체나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이 없고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영업주체 및 상품주체에 관한 혼동가능성에 관한 소극적 판단의 가능성은 앞에서 소개한 Viagra 사건에서의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주27)에서 잘 볼 수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meta-tag이 허위의 표시로 고객흡인을 하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마치 허위의 원산지표시를 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원산지의 표시와 meta-tag은 개념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문리적 해석상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특허법의 개정

(1) 개정 현황

WTO/TRIPs는 미생물이외의 동물과 식물도 불특허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다만 식물변종의 경우에는 특허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특허법은 감자, 고구마, 양파와 같은 무성번식 식물만을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번식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어서, 농림수산부는 1996년도에 종자

[51]

의 보호에 의하여 유성번식식물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WTO/TRIPs는 특허법적 보호기간이 출원일로부터 최소한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28) 1997년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때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고 그러한 허가나 등록을 위해서 소요되는 활성·안정성의 시험을 위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그러한 존속기간의 연장은 1998년 개정에 의해서 더욱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주29) WTO/TRIPs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허락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주30)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국내 특허법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고, 통상실시권하여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도 이용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이용허낙(cross license)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주31) 다만, 개정안이 강제실시허여의 새로운 사유로서 열거하게 된 "불공정경쟁행위 시정"의 경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경쟁제한 행위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즉 시정권고와 시정조치를 내릴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고 심지어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재판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주32) 특허권자에 의한 대부분의 경쟁제한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시정될 것이고,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공정경쟁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통상실시권의 재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WTO/TRIPs는 특허권보호에 관한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보호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국의 국내법의 보호수준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무역상대방 국가들로

[52]

하여금 유사한 보호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후술하다시피,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상의 일방적 제재조치를 무기로 해서 한국 등에 대해서 WTO/TRIPs 이상의 특허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국 등의 보호요구를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산업계의 특허권보호의 요구도 고려해서, 추가적인 특허법개정을 실시했다. 우선, 특허권취득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곧바로 특허사정을 하도록 하고 특허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주33) 또한,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권의 무효주장은 종전까지 반드시 2심의 심판을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을 뿐이었지만, 1995년 특허법개정에 의해서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은 특허법원에 제기되도록 해서, 법원에 의한 재판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주34)

(2) 인터넷 발명의 보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 ([특허법 제2조 1호](#))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특허법 제1조](#)), 발명이란 이러한 특허법의 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개념적 도구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올바르게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특허법의 개정시마다 발명의 개념이 확장되어 온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진국의 특허법의 발전사를 보더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발명의 개념도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근대적인 형태의 특허법이 탄생한 17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다양한 종류의 기계에 관한 소위 장치발명이 특허발명의 전부인 것으로 보았으나, 그 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방법발명, 물질발명, 동·식물발명, 컴퓨터발명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다시말해서, 방법발명의 경우에 초기에는 기계나 장치에 관련된 방법이나 절차가 아니면 발명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화학의 발전으로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단순히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정한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구체적 아이디어로 인정되고 따라서 특허의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53]

게 되었다.주35) 또한, 화학을 비롯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 또는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해낸 물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물질의 생산을 위해서 이루어진 투자의 회수를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로서 특허권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물질발명의 특허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은 동물이나 식물도 더 이상 신의 창조물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인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 또는 변종의 동물이나 식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고 동물·식물에 관한 발명도 특허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간 유전자 염기배열에 대해서도 "새로운 물질로 정제되고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가 부여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주36) 그리고, 최근의 컴퓨터기술의 발전은 수학공식의 이용이나 사업방법의 자동화에 의해서도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과연 특허받을 수 있는 인터넷발명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주37)

III. WTO/TRIPs체결이후의 통상문제

1. 저작권 관련 통상문제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의식의 향상으로 인해서 저작권보호가 크게 강화되어 왔으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외국은 여전히 한국내 불법복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1999년 개정 저작권법도 디지털시대의 무단복제를 방지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에 의한 전송의 예외는 저작권의 경제적이익을 실질적으로 크게 해할 위험이 있고, 저작인접권자의 전송에 관한 권리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고, 디지털시대에 무단복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관리정보라거나 기술적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

[54]

되고 있다.주38) 특히 직물도안의 보호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허용은 심각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1) 직물도안의 보호

미국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의 직물도안을 모방하거나 복제해서 직물을 생산하고 동 무단복제 직물을 제3국에 수출까지 해서 미국에서 적법하게 생산되어 수출된 정품과 경쟁함으로써 침해물품의 주된 원산지로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직물도안(textile designs)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직물도안에 관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물도안 등의 응용미술품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저

작권법에 의한 중복적 보호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직물도안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는 인정되어서는 않된다고 판시하였다.주39) 그러나, 저작권법 어디에도 의장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저작물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현행법하에서 응용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직물도안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응용미술작품을 저작물로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법규정을 사문화시키는 입법적 해석에 해당된다는 비난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난이 제기되자 1999년에 이루어진 저작권법 개정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하는 개념정의규정을 두게 되었다. 다만,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직물도안은 직물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직물의장의 저작권법적 보호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 있다고 보여진다.

직물도안에 관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인하는 대법원판결은 1996년에 내려진 바 있는데 1999년의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내외 직물디자인산업은 의장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장법에 의한 보호는 의장출원을 한 때로부터 및 심사를 거친후 등록이 될

[55]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그동안 직물도안의 시장수명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직물도안 등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7년에 의장법이 개정되어 제한적으로 의장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 의장법에 의하면, 의장무심사등록이라고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출원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의장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의장등록요건의 일부 사항만을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무심사등록의 필요성이 있는 직물의장 등의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수명이 짧고 다양한 의장을 생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으로 하는 "다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주40) 의장무심사등록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의장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러한 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미국의 직물의장이 허락없이 제3자에 의해서 한국 특허청에 등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41)

(2) 컴퓨터프로그램의 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의해서 새로이 허용된 역분석(decompilation)의 예외가 저작권의 보호를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역분석이라고 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프로그램 목적코드를 분석하여 소스코드로 변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기존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들, 즉 알고리즘을 추출하고 그 얻은 결과를 기초로 전혀 다른 표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역분석이 위에서 살펴본 사적복제라거나 사용자의 권리의 범위내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저작권의 효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역분석 또는

역분석을 저작권의 제한사유의 하나로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개정법 제12조](#)는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연구·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

[56]

해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역분석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과연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우선, 역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을 알기 위해서 그 목적코드를 원시코드로 변환하는 것이고 그러한 역분석 행위는 단순 복제가 아니라 번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법은 복제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정법상의 저작권제한만으로는 역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역분석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법 또는 기타의 특정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들고 있는데, 기타의 특정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너무나도 추상적이어서 역분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차라리 유럽공동체의 입법례처럼^{주42)}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분석의 범위에 분석이나 연구이외에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저작권제한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교육목적의 저작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역분석의 예외를 규정함에 있어서 다시 교육목적의 복제와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고, 설사 번역의 결과 만들어진 원시코드를 다량 복제해서 피교육자에게 배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복제 및 배포가 일반적인 교육목적의 복제·사용의 허용범위를 초과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2. 상표 관련 통상문제

[개정 상표법 제7조](#)는 악의로 외국의 주지상표를 그 허락없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등록사유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지상표가 한국특허청에 등록된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그러한 구체적 절차를 취하는 것을 꺼리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주43)} 심판 절차등의 구체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은 외국기업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법제도의 선진화

[57]

와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주지상표를 국내에서 제3자가 허락없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Viagra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유사성 또는 상품주체나 영업주체의 혼동가능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외국에서는 상표권자가 제3자에 의한 도메인네임등록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

다. 인터넷 도메인네임은 상표와 달리 그 속성상 전세계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고 전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해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쟁사안을 미국 등의 법정에 제기하면 전혀 상이한 구제수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이 무의미해지거나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3. 특허권 관련 통상문제

특허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특허청구항의 제한적 해석이라거나 이용발명과 기본발명의 불합리한 관계 등으로 인해서 특허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제조를 허가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의 제조를 허가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2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서 의약품제조를 허가함에 있어서 의약품제조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그 자료제출자가 그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 비밀로 유지하고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데, 주44) 무엇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영업비밀의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주45) 생각건대 이러한 문제점들은 법집행상 외국의 특허권자 뿐만아니라 국내 특허권자에 의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법규정의 엄격한 집행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한국의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이 WTO/TRIPs를 준수하고 있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외국인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국에서의 보호수준에 비해서 만족할만한 수

[58]

준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후 미국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상보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스페셜 301조가 다자간체제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칙으로 하고있는 WTO분쟁해결절차와 병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미국은 WTO협정체결이후 스페셜 301조를 개정하여 미국통상대표(USTR)로 하여금 WTO협정위반사항은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에 제소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하여 WTO분쟁해결절차와 병행하여 스페셜 301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예컨대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 BIT)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자국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추가적 보호를 선제조건으로 제시할 때,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할 필요도 없이 사실상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주1)

Sang-Hyun Song and Seong-Ki Kim, The Impact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Korea, 13 UCLA Pac. Basin L.J. 118 (1994).

주2)

[http : //jus.snu.ac.kr/~sjjong/English/patents/sld005.htm](http://jus.snu.ac.kr/~sjjong/English/patents/sld005.htm).

주3)

1999년 11월 13일 현재 WTO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은 135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에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다 : [http : //www.wto.int](http://www.wto.int).

주4)

WTO/TRIPs, Arts. 65 & 71.

주5)

US Trade Representative, "Special 301"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 : //www.ustr.gov/reports/301report/factsheets.html](http://www.ustr.gov/reports/301report/factsheets.html).

주6)

[줄고, WTO체결이후의 지적재산권 문제, 통상법률 \(통권 제14호; 1997년 4월\).](#)

주7)

[베른협약 제11조, 제11조의 3, 제14조, 제14조의 2.](#)

주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및 저작권법 제18조의2.](#)

주9)

"MP3 file"이라고 함은 MPEG layer-3 라고 하는 압축기술의 도움으로 음악 등의 음성정보를 압축저장한 디지털파일이다. 여기에서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음성·영상 정보를 압축하여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련의 기술표준을 말한다. 여기에서 MP3 파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 파일의 확장자로 압축기술의 명칭에서 유래된 확장자 xxxxx.mp3가 쓰여지기 때문이다.

주10)

MP3파일의 복사 및 전송은 음악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미국판결로는 *UMG Recordings, Inc. v. MP3.Com, Inc.*, 2000 WL 524808 (S.D.N.Y.) 참조.

주11)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참조.

주12)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 Inc., 464 U.S. 417 (1984).

주13)

17 U.S.C. §1203.

주14)

RealNetworks, Inc. v. Streambox, Inc., 2000 WL 127311,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D. Washington, Jan. 18, 2000)에서 원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포맷된 음성정보, 영상정보, 기타의 멀티미디어정보는 소위 RealMedia파일로서 "Secret Handshake"라는 인증장치에 의해서 원고 프로그램인 RealPlayer에만 전송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 Streambox의 문제된 제품 Streambox VCR은 원고 프로그램의 인증장치 "Secret Handshake"를 우회하고 마치 피고의 VCR이 원고 프로그램 RealPlayer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RealMedia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나아가 동 파일 속의 복제금지명령 (Copy Switch)를 무시하고 동 파일을 전송 및 복제(i.e., download)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인데, 워싱턴연방지방법원은 피고의 제품이 복제방지기술을 무력화하는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일한 사안에서 원고 프로그램의 인증장치나 복제금지명령은 음성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에 해당될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조치로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15)

WTO/TRIPs 제15조.

주16)

[상표법 제2조.](#)

주17)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

주18)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 제10조, 제12조.](#)

주19)

[서울지방법원 1999. 10. 8. 선고, 99가합41812 판결.](#)

주20)

[서울지법 1999.11.24., 99카합2819 결정.](#)

주21)

[서울지법 1999. 11. 18. 선고 99가합8863 판결.](#)

주22)

그러나, 최근 대법원판례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대리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수원도매센터"라는 서비스표로 전기 전자용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한 [대법원 1996.6.11. 선고 95도1770판결](#)은 상품과 서비스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도메인네임의 사용도 상표권의 침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생각된다.

주23)

[http : //ecommerce.wipo.int/domains/process.](http://ecommerce.wipo.int/domains/process)

주24)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Case No. D99-0001([http : //arbiter.wipo.int/domains/decisions/index.html](http://arbiter.wipo.int/domains/decisions/index.html)).

주25)

Insituform Technologies Inc. v. National Envirotech Group, L.L.C. Civ. No. 97-2064(E.D. La., 1997);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Civ. No. C-97-3204 (N.D. Cal., 1997); Playboy v. AsiaFocus and Internet Promotionsl, Civ. No. C-97-3204 (N.D. Cal., 1997); N.V.E. v. Hoffmann-La Roche, CA No. 99-5858 (WHW).

주26)

Playboy v. Terri Welles, Civ. No. C-97-3204 (N.D. Cal., 1997).

주27)

[서울지법 1999. 11. 18. 선고 99가합8863 판결.](#)

주28)

WTO/TRIPs 제33조

주29)

[특허법 제88조](#) 및 [제89조](#)

주30)

WTO/TRIPs, Arts. 8, 30, 31.

주31)

[특허법 제107조](#) 및 [제138조](#)

주3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51조](#), [제57조](#)

주33)

[특허법 제50조](#), [제66조](#), [제69조](#)

주34)

[특허법 제132-2조](#) 및 [제186조](#)

주35)

Robert P. Merges, As Many as Six Impossible Patents Before Breakfast : Property Rights for Business Concepts and Patent System Reform (September 6, 1999) : [http : //papers.ssrn.com/paper.taf?ABSTRACT_ID=180748](http://papers.ssrn.com/paper.taf?ABSTRACT_ID=180748).

주36)

특허청 유전공학발명 관련 자료, [http : //dephome.kipo.go.kr/~nip21](http://dephome.kipo.go.kr/~nip21).

주37)

Leo J. Raskind, The State Street Bank Decision : The Bad Business of Unlimited Patent Protection for Methods of Doing Business, 10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61 (1999), p.67;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149 F.3d 1368 (Fed. Cir. 1998), cert. denied, 119 S. Ct 851 (1999); Amazon.com v. Barnesandnoble.com, 73 F. Supp. 2d 1228 (1999 U. S. Dist.).

주38)

USTR, 200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www.ustr.gov/reports/nte/2000/korea.pdf>).

주39)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 판결.](#)

주40)

[의장법 제11-2조](#)

주41)

USTR, 200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265 (<http://www.ustr.gov/reports/nte/2000/korea.pdf>).

주42)

Art. 6(1) the EC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주43)

USTR, 200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www.ustr.gov/reports/nte/2000/korea.pdf>).

주44)

[약사법 제72조의 9.](#)

주45)

USTR, 200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http://www.ustr.gov/reports/nte/2000/korea.pdf>).